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
나. 금융투자업규정

2.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규정*

가.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2017/3/8개정·시행[1])

1) 목적

□ 타 규정 개정으로 인한 반사적 규제강화 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의 조문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 지정기준이 되는 횡령·배임금액은 임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0.5% 이상으로, 직원의 경우 해당법인 자기자본의 5%(코넥스시장의 경우 10%) 이상으로 함

— 다만, 유가증권시장의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.025%로,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.25%로 하고, 코스닥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.025%로,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%으로 하며, 코넥스시장의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동 금액을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0.025로 함(18조의2 2항 단서)

---

* 해당 내용은 개정된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1) 다만, 18조의2 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원의 횡령·배임으로 고소·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지정 기준일이 도래하지 않은 회사에 대해서도 적용

나.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(2017/3/22개정·시행[2)3)4)5)6)])

1) 목적

□ 회사채 활성화 방안('16.7월),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('16.11월)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을 반영하고, 그 밖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채권전문딜러 책임 강화(5-12조)

—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시장 조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외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 종목 수를 2개에서 5개로 확대

- (기존) 회사채 2종목,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
- (개정) 회사채 5종목, 금융채 2종목 포함 총 9종목

□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기한 단축(6-31조 3항)

— 공매도 대량보유자 및 종목별 공매도 잔고 보고 · 공시 기한을 현재 여건 하에서 최대한 단축

- 기존 T+3일에서 T+2일로 단축

□ 금융투자업자 인가 시 인적 요건 명확화(별표 2 1호 라목)

---

2)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함, ① 2-24조, 2-36조, 3-66조, 4-18조, 4-61조, 4-62조, 4-76조, 4-92조, 6-31조 및 6-31조의2의 개정규정: 고시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, ② 3-7조, 3-8조, 5-25조, 8-42조, 8-43조 및 8-44조의 개정규정: 2017년 3월 31일, ③ 3-42조의 개정규정: 2017년 7월 1일

3) 이 규정의 시행으로 2-2조의4 5항에 따라 새로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이 규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게재 조치를 하여야 함

4) 별표2 1호 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인가(예비인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하며, 다만, 이 규정 시행 전에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
5) 이 규정 시행 전에 금융투자업 인가(예비인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 또는 금융투자업 인가(예비인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여 이 규정 시행 후 인가를 받은 자가 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, 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: 별표2 1호라목 및 사목의 개정규정, ② 집합투자업 또는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자: 별표2 1호 사목의 개정규정

6) 별표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를 기준으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

— 투자매매·중개업 인가 시 최소 보유 전문인력 수 등 인적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

☐ 인가요건 중 외국사 차별 해소(별표 3 1호 라목(4))

— 금융투자업자 인가 시 대주주인 외국금융회사와 국내금융회사의 사회적 신용요건을 동일하게 정비

- (기존) 최근 3년간 기관경고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
- (개정) 최근 1년간 기관경고, 3년간 영업정지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을 것

☐ 우발채무관리 강화 등 증권사 건전성 규제 정비(2-36조 등)

— 증권사·종금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

- (기존) 고정이하 채무보증에만 적립
- (개정) 모든 채무보증에 적립

— 자산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 의무 부과

— 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경영실태평가 재정비

- 채무보증 관련 내부 심사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의무화
- 경영실태평가 항목에 채무보증을 반영한 조정레버리지비율 및 조정유동성비율을 추가

☐ 담보목적 대차거래 허용(5-25조 4항)

— 기존 질권설정 방식 이외에 증권대차 방식으로도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

- 단,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의 과도한 재활용을 제한하려는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정하여 도입
- 위의 요건이라 함은 ① 통합도산법상 일괄정산조항이 적용되는 적격 기본거래에 한정, ② 담보증권은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국채·통안채로 한정, ③ 담보재활용 목적은 RP 및 담보 제공으로 한정(개시증거금으로 활용 불허), ④ 감독당국이 제시하는 담보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일일정산의무 부과를 의미

☐ 재산상이익 관련 규제 정비(3-66조 1항 7호의3)

— 재산상이익의 제공·수령 관련 규제를 보고·공시 규제로 전환하고 회사 내부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

- (기존) 준법감시인 사전 보고, 회사별 연간 한도(10~30억원) 규제
- (개정) 관련 자료 기록 유지 및 금감원 보고·공시 규제로 전환

□ 파생결합증권 중도상환가액 기준 마련(2-24조 1항에 5호)

—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중도상환시 증권사가 임의로 상환가액을 책정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 부과

□ 증권금융회사 외국환업무 등록 요건 정비(2-11조 1항 2호에 라목)

— 금융투자업자의 해외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회사의 외화조달 및 대출을 위해 외국환업무 등록 기준 마련

- 타업권과 동일하게 해당 금융업 진입 및 영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무기준(자기자본 500억원, BIS 비율 8%)

연구원 배승욱(02-3771-0867, bsu@kcmi.re.kr)